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21
----------	-----

2024년 3월 7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5. 30. 최민규 의원 외 52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6. 5.
다.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4년 3월 7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수행인력의 동행은 필수적이지만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신청과 허가 과정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지면서 중복·반복되는 심의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국의

활동의 수행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예외 대상에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6. 8. ~ 2023. 6.12.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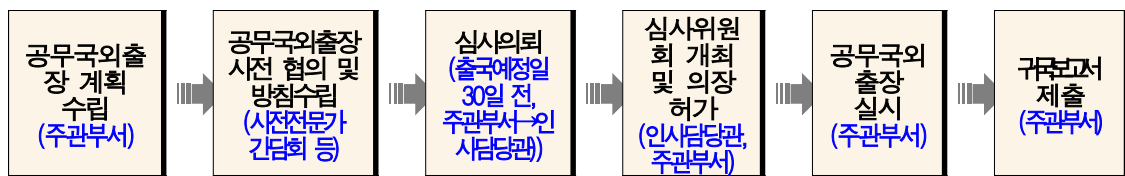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하 “의원 공무국외 조례”)에 따라 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으로 참여하는 의회 공무원을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출장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시행(2022.1.13.)에 맞춰 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의회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출장 조례로 제정·시행(2022.1.13.) 중임.
- 출장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¹⁾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친 후에는 이에 대한 귀국보고서를 작성해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함.

<공무국외출장 절차>



1) 심사위원 7명(위원장(의회사무처장) 1, 부위원장 1, 위원 5) : 내부 3명(의회사무처장, 인사담당관, 신청부서장), 외부4명(참고자료2).

- 이때 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한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에 따라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국외출장 목적과 방문 국가·기관의 적절성, ▶국외출장 참가자 수와 구성의 적합성, ▶국외출장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국외출장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등의 항목을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17개)에 적용해 심사함.
- 2023년 심사위원회는 총 10회 개최돼, 공무국외출장 17건,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1건 등을 심사하였음.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현황>

연번	주관부서	출장일정	출장국가	비고
1	의정담당관	2023-12-17 ~ 2023-12-21	베트남	
2	의정담당관	2023-10-17 ~ 2023-10-21	일본	
3	의사담당관	2023-09-20 ~ 2023-09-26	프랑스	
4	의정담당관	2023-08-14 ~ 2023-08-18	몽골	
5	의정담당관	2023-07-12 ~ 2023-07-19	캐나다	
6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2023-07-09 ~ 2023-07-15	싱가포르 홍콩	
7	의정담당관	2023-07-05 ~ 2023-07-12	체코 독일	
8	주택공간 전문위원실	2023-05-21 ~ 2023-05-29	스페인	
9	교통전문 위원실	2023-05-18 ~ 2023-05-25	스웨덴 핀란드	
10	문화체육관광 전문위원실	2023-05-22 ~ 2023-05-28	호주	
11	환경수자원 전문위원실	2023-05-09 ~ 2023-05-17	스페인 포르투갈	
12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2023-05-09 ~ 2023-05-17	스위스 이탈리아	
13	의정담당관	2023-04-27 ~ 2023-05-01	호주	
14	도시계획 전문위원실	2023-05-09 ~ 2023-05-16	호주 뉴질랜드	
15	보건복지 전문위원실	2023-03-16 ~ 2023-03-23	호주 뉴질랜드	
16	도시인간환경 전문위원실	2023-03-14 ~ 2023-03-21	일본	
17	교육전문 위원실	2023-03-21 ~ 2023-03-28	호주	

3 조례 적용범위 제외(안 제2조제2항제4호)

- 개정안은 의원 공무국외 조례에 따라 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으로 참여한 공무원 등을 출장 조례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제2항제4호)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p> <p>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의회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p> <p>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p> <p>3.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p> <p><신 설></p>	<p>제2조(적용범위) ①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p>

- 이는 의원 공무국외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경우 의원 공무국외 조례와 출장 조례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이중으로 받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중복 심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 현행 출장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이며, 상위법령²⁾ 등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거나 외부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장 조례의 적용 예외로 두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출장 조례의 적용예외 대상에 ‘의원 공무국외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심사 절차의 중복을 개선할 경우 행정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기대³⁾되며, 국회사무처나 17개 시·도의회에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3).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조례 적용범위에서 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을 제외할 경우 심사위원회가 형해화(形骸化)⁴⁾되고, 공무국외출장자의 공무국외출장 신청·허가, 교육, 보고의무, 자료수집, 귀국보고서 등의 사전·사후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국외출장 시 수행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적용을 받아 공무국외출장 심사·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내실있는 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수행인력을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보다는 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지 않도록 ‘의원 공무국외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같음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3) 의회사무처 의견 : 원안동의

4) 2023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총 10회 개최돼, 공무국외출장 17건,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1건 등을 심사한 바, 심시대상에서 수행인력을 제외할 경우 기본계획 1건만 심사하게 됨.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p>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p> <p>1. ~ 3. (생략)</p> <p><신 설></p> <p>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①·② (생략)</p> <p><신 설></p>	<p>제2조(적용범위) ①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p>	<p>제2조(적용범위) ① - ----- ----- --.</p> <p>② ----- ----- ----- -----.</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삭제</p> <p>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u>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u></p>

4 종합 의견

- 개정안은 의원 공무국외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경우 의원 공무국외 조례와 출장 조례에 따라 중복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행정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동 조례 적용범위에서 공무국외활동의 수행인력을 제외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통한 조정 보다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문으로의 조정될 필요가 있음.

담당 연락처

02-2180-7688

참고1

지방의회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참고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요

□ 심사위원회 운영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 심사위원 : 7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 ※ 내부 3명, 외부 4명
- 회의운영 : 정기회(월 1회, 매월 둘째주), 임시회(월 1~2회, 필요시)
- 의결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 사 위 원 회 정 려 개 최

- ▶ 매월 둘째주 정기회 개최(서면결의 포함)
- ▶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 및 심사의뢰 요청 등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례화

□ 심사전 17개 세부 심사기준 검토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진행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별표(붙임)의 7개 항목 17개 세부 심사기준 적용
- 7개 항목에 대한 각 위원별 의견 기재 의무화로 심사의 명확성 확보

참고3

17개 시·도의회 공무원국외출장 조례 및 규정 적용예외 및 심사 생략 현황

지역	적용예외	위원회 심의 생략
서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의회 국외훈련계획,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부산	별도 의회 조례 없음	시 조례로 적용예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대구	1. 대구광역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원국외출장의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의회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원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4.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인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 파견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원국외출장과 의원 공무원국외출장 수행하는 경우	
광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대전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시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외국 도시에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1. 의장, 부의장과 동행하는 공무원국외출장 2.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3.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다른 기관·단체 및 국제행사 준비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 국제기구 등에 파견 중인 공무원이 파견 기관·단체의 자체계획에 따라 자체 경비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울산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자치단체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경기도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도의회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3.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심사예외 :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원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원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같음할 수 있다.
충청북도		다만, 소속 공무원이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원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같음할 수 있다.

지역	적용예외	위원회 심의 생략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심사예외 :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시도의회, 장협의회,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별도 규정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별도 규정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1.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다만, 공무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1.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중앙부처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 국회의 경우 「국회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고,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의 심사는 제4조제1항제2호(국회·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공적 목적을 위한 해외파견 또는 출장)에 한하여 적용함(국회사무처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실시 기준에 대한 지침 제2조5).

5)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장(해외파견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되 의정연수원에서 연수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내실있는 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수행인력을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보다는 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함.

나.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을 신설).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기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찬성 10명)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21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7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내실있는 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수행인력을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보다는 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을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원안과 같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p>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 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p> <p>1. ~ 3. (생략) <신 설></p> <p>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①·② (생 략) <신 설></p>	<p>제2조(적용범위)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의 회의원 공무국외활 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활동 의 수행인력으로 참 여하는 경우</p> <p>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적용범위) ① - ----- -----.</p> <p>1. ~ 2.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p> <p>1. ~ 3. (개정안과 같음) <삭 제></p> <p>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u>의회 소속 공무원 이 서울특별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 해 출장하는 경우에 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같음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①~② (생략) <u><신설></u></p>	<p>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 시의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 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 한 조례」에 따른 의원 공무국 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 음할 수 있다.</u></p>